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사회복지·공공안전

1.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합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융합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 우선,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데이터융합SW(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임베디드시스템(스마트팩토리 실무)과정이 '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입니다.
-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

추진배경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필요

주요내용 ①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Test-Bed)로 하여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 훈련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

②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

시행일 2017년 1월 훈련기관 공모, 2월~ 훈련생 모집

2.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훈련 직종별 취업성과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였으나, 2017년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됩니다.
 -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됩니다.
 -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기존 30%)로 확대됩니다.

2017년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

추진배경	취업성과와 훈련생 개인부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성과 직종 훈련 확대
주요내용	①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 20~50%→5~80%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 : 0~30%→0~50%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를 반영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2016년 현재 114개 직종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훈련실적이 없고,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핀테크,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을 새롭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비정기적으로 개편해왔으나, 앞으로는 매년 국가인력양성협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계획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 반영
- 주요내용** ① 훈련실적 및 성과 저조 직종 제외
②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개발·활용,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 포함
③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 정례화
- 시행일** 2017년 1월(잠정)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17년 사업내용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 **기간**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출산후 45일 보장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출산후 60일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액**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150만원)을 휴가기간(90일)에 대하여 지원
※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추진배경**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7년 1월 1일

5. 최저임금 인상

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2,230원(6,47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823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배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주요내용 2017년 최저임금 : 시간급 6,470원

* 일급 8시간 기준 51,760원, 월급 1,352,230원(6,47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 휴 8시간 포함))

시행일 2017년 1월 1일

6.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를 제조·수입할 경우,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 등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판매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2016년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수입하였을 경우, 냉매의 종류, 판매량,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2017년 1월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http://www.rim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조·수입한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물질

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냉매판매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추진계획

추진배경	기후변화 영향이 큰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냉매판매량 현황 파악
주요내용	냉매 제조·수입시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
시행일	2017년 1월 1일

7.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全)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금지
*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MIT) 2-Methyl-4-isothiazolin-3-one, 메틸이소티아졸론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추진배경	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주요내용	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 ② 안전·표시기준 강화(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 표시사항 추가)
시행일	2016년 12월(잠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 